비자 · 여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 여권]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체류하려는 체류목적별로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국가간 협정 등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명서로,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비자 · 여권의 발급부터 비자연장, 비자변경, 여권의 분실 등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비자에 관한 법령정보와 해외여행을 가려는 대한민국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여권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자 · 여권 1
1. 비자 4
1.1. 비자 알아보기 4
1.1.1. 비자 이해하기 4
1.2. 비자 발급받기 6
1.2.1. 일반적인 발급절차 6
1.2.2.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발급 9
1.3. 비자없이 입국하기 11
1.3.1.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11
1.3.2. 비자면제협정 12
1.3.3. 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 제도 13
1.4. 비자연장 및 변경하기 15
1.4.1. 비자 연장하기 15
1.4.2. 비자 변경하기 18
2. 여권 22
2.1. 여권 알아보기 22
2.1.1. 여권 이해하기 22
2.2. 여권의 발급 및 사용 등 26
2.2.1. 여권 발급받기 26
2.2.2. 여권발급의 거부 · 제한 · 반납 등 31
2.2.3. 여권의 사용제한 33
2.2.4.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하기 36
2.2.5. 여권 재발급받기 37

1. 비자

1.1. 비자 알아보기

1.1.1. 비자 이해하기

※ 법령에서는 “사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콘텐츠에서는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되는 “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사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요건

▪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제3항).

-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 체류기간이 법령에 따라 정해졌을 것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비자”의 개념

▪ “비자”란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사증”이라고도 하며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명시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참조).

<대한민국 비자에 기재되는 세부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0. 9. 25.>

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

① Visa No. (사증번호) : AB0000000000 (출력일시) 2020.00.00. 00:00

1. DETAILS OF APPLICANT 신청자 정보

사진 PHOTO (35㎜×45㎜)	성 Family Name 명 Given Names			
	생년월일 Date of Birth	(yyyy/mm/dd)	성별 Sex	Male / Female
	국적 Nationality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만료일 Passport Expiration Date	(yyyy/mm/dd)		

2. 사증 사항 VISA DETAILS

② 체류자격 Status of Stay		③ 체류기간 Period of Stay	(yyyy/mm/dd)	④ 사증 종류 Number of Entries	
⑤ 발급일 Date of Issue	(yyyy/mm/dd)	⑥ 사증 유효기간 Validity Period of Visa	(yyyy/mm/dd)	⑦ 발급 기관 Issuing Authority	
비고 Remarks					

This document confirms that the above applicant's Korean visa application has been approved and that the visa is currently vali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Entry of Aliens) of the Immigration Act.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된 신청인에 대하여 사증이 발급되었으며 해당 사증이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Minister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 유의사항 NOTICE >

1. 이 사증발급확인서는 신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증이 유효하게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은, 본 서류에 사진이 인쇄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사증발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공식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서류의 유효성은 인터넷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is a proof that a valid visa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been issued to the above applicant. The holder of this document may use it as an official proof to verify the issuance of the ROK visa, even without a photo on it. The validity of this document can be verified on the KOREA VISA PORTAL web-site (www.visa.go.kr).
2. 이 확인서를 소지한 신청인은 위에 기재된 사증 유효기간 동안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며, 기재된 체류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holder of this document may enter the ROK during the **Validity period of Visa** stipulated above after going through immigration inspection by Korean Immigration authorities, and may stay during the **Period of Stay**. Nevertheless, a visa holder may be denied entry into the ROK in the process of immigration inspection, and the Period of Stay can be changed by immigration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Act.
3. 본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제시하여 본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향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Forging or falsifying this document, or stating false information to obtain this document is strictly prohibited and may result in punishment and entry denial under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OK.
4. 확인서에 기재된 여권의 정보(여권번호, 유효기간 등)가 변경되는 경우,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여권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In case the passport information (Passport Number, Date of Expiry, etc.) indicated in this document changes, applicants are required to visit Consular Offices of the ROK to report the changes and have a visa grant notice re-issued.
5. 이 확인서에 기재된 여권 정보와 소지한 여권의 정보가 다른 경우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ntry may be denied should the passport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differ from that shown on the applicant's passport.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① **사증번호:** 비자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대한민국 입국일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사증 종류:** 비자의 종류 즉, 단수비자(Single) 또는 복수비자(Multiple) 표시

⑤ **발급일:** 비자의 발급일

⑥ **사증 유효기간:** 비자의 유효기간을 의미함. 유효기간 이전에 한국에 입국해야 함.

⑦ **발급 기관:** 비자 발급 기관에 대한 정보

※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하려는 국가의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비자가 아니므로, 출국 전 반드시 방문예정국가의 주한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영사협정/사증(비자)-영사협정-사증면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

▪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복수비자		단수비자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발급일부터 3개월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체류자격"의 개념

▪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참조).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제1항 참조).

일반체류자격		영주자격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비자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입국목적별 적합한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비자 발급받기

1.2.1. 일반적인 발급절차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으세요.

재외공관 방문하기

▪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

※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비자 신청하기

▪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비자 발급 신청 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하기

▪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단체비자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단수비자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함) 40불 상당의 금액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 ※ 위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참조). 또한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비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협정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구체적인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비자포털-비자안내-수수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심사받기

▪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자 발급받기

▪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Q.** 대한민국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려면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 **A.**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각각 그 입국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은 동반(F-3)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6. 5.), 313-317쪽 참조>

비자 발급의 거부

▪ 재외공관의 장,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자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비자발급신청인”이라 함)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발급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한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비자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의 통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비자발급거부통지서를 주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 비자발급이 취소됩니다.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짓신청 및 알선 금지

▪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1.2.2.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발급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사증발급인정서 참조).

발급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 국가의 국민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세요.

신청방법

▪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3호).

> ※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준

▪ 비자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제17조의3제1항).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체류자격 등에 따라 발급기준이 다르거나 신청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하이코리아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세요.

발급 및 유효기간

▪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비자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는 비자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비자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 다만,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등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청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법에서 정하는 발급 거부 대상에 해당하여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이나 이를 대리한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1항).

- 다만,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이나 이를 대리한 사람이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함)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2항).

▪ 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비자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비자발급인정서에 비자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항).

▪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정신청행위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제2호).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비자발급을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 다만,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비자발급

▪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 또는 비자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

▪ 재외공관의 장은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받아 비자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비자를 발급받은 때에는 비자발급인정서를 회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및 제4항).

1.3. 비자없이 입국하기

1.3.1.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해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 ※ 비자면제협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비자-비자없이 입국하기-비자면제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 무비자입국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비자-비자없이 입국하기-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여행허가 받기

-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다음의 외국인에 대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1항).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비용은 1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제2항·제3항 및 제72조제1호의2).
  -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닐 것
  -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될 것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

1.3.2. 비자면제협정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대한민국 입국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

▪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을 하려는 때에는 그에 합당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 참조).

> ※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목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방법

▪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사증면제(B-1)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되고, 외교·관용 비자면제협정 적용대상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려는 외국인은 외교(A-1) 또는 공무(A-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비자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비자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3항).

> **Q.** 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의 국민에 해당되어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보니 관광을 더 하고 싶어졌어요. 이런 경우, 체류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A.** 원칙적으로 비자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4-25쪽 참조>

1.3.3. 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 제도

외국인이 관광통과,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정에 의한 무(無)비자 입국 제도

▪ 대한민국은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비자입국 허가대상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 참조).

▪ 이에 따라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2. 30일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무비자입국 대상국가의 목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없이 입국하려는 사람의 입국요건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 ※ 자세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이 허가된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30일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의 입국요건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이 허가된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 범위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으며,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위에 해당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은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자격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체류자격연장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4항).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입국요건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1.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3.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인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위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1. 입국허가 신청서

2. 유효한 비자를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3.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 자세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국이 허가된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참조).

1.4. 비자연장 및 변경하기

1.4.1. 비자 연장하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연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 상의 용어인 “체류기간연장”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인“비자연장”을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신청방법

▪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 비자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예약

▪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5호 참조).

※ 비자연장 신청을 위한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하기

▪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비자(F-6) 를 가진 경우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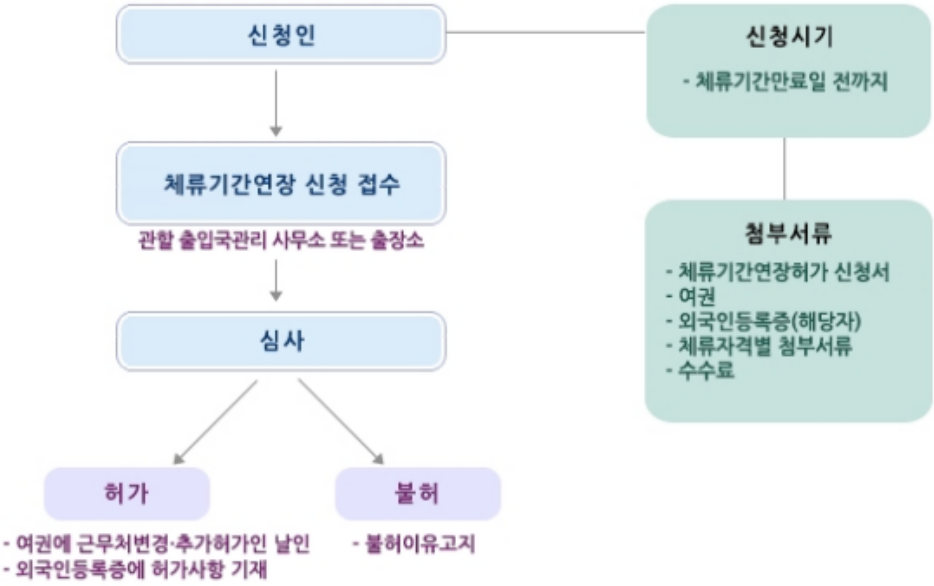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항).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할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함)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비자연장허가의 절차

▪ 비자연장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연장허가 절차도



<출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외국인의 체류-체류기간 연장>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비자연장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비자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 비자연장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제43호의3서식).

▪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비자연장의 상한

▪ 비자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참조).

▪ 계절근로비자(E-8)를 가진 사람의 비자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은 계속하여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참조).

▪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진 사람의 비자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 유학비자(D-2)를 가진 사람의 부·모 또는 그 배우자로서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유학비자(D-2)를 가진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참조).

> **Q.** 저는 대한민국에 영주권(F-5)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저와 같은 영주권자도 비자를 연장해야 할까요?
>
> **A.** 대한민국의 영주비자(F-5)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즉 영주권자는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자를 연장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33조제3항 참조).

출국을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출국기한의 유예

▪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함)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출국기한을 유예받으려는 외국인은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위 1.부터 4.까지 외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

1.4.2. 비자 변경하기

외국인이 기존에 입국한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려는 경우,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변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자격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비자변경”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 비자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 비자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경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온라인 방문 예약

▪ 비자변경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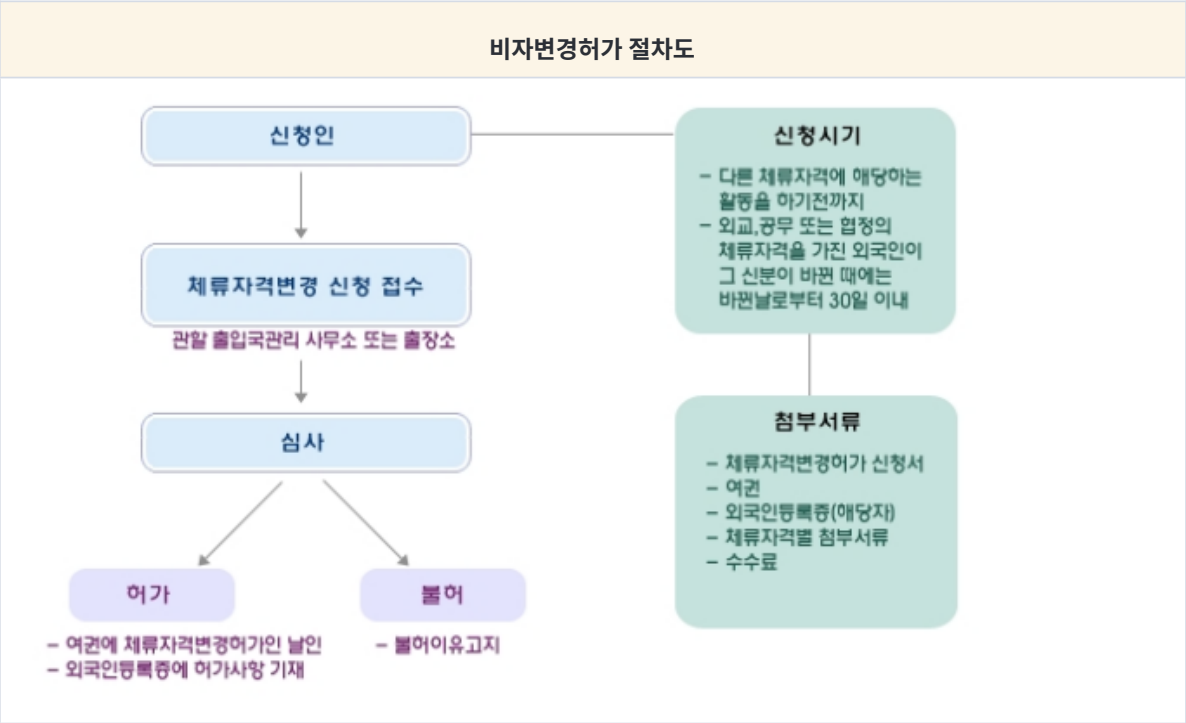
> ※ 비자변경 신청을 위한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하기

▪ 비자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F-5)을 가진 경우에는 2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비자변경허가의 절차

▪ 비자변경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외국인의 체류-체류자격변경>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비자변경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 비자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제43호의2서식).

▪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Q. 유학비자를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입니다. 혹시 취업이 가능할까요?

A. 부여받은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비자로 비자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유학비자(D-2)와 같이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자격 외 활동 또는 시간제취업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어 허가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지한 비자가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인지, 비자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확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5-47쪽 참조>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 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6호).

2. 여권

2.1. 여권 알아보기

2.1.1. 여권 이해하기

※ 이 콘텐츠에서는 일반여권의 발급, 사용, 재발급 등 일반여권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의 개념

▪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 및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여행증명서와의 구별

• "여행증명서"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함)로 발급되는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를 의미합니다(「여권법」 제14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16조).

·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 해외 입양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그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4조제2항).

여권의 구분 및 종류

▪ 여권의 종류는 발급대상을 기준으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으로 나뉘며,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됩니다(「여권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여권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종류			면수	색상
전자	일반여권	단수여권	14면	남색
		복수여권	26면 또는 58면	
		5년 미만의 복수여권	26면	
	관용여권		26면 또는 58면	진회색
	외교관여권		26면 또는 58면	적색
비전자	긴급여권(단수여권)		12면	청색
	여행증명서		12면	검정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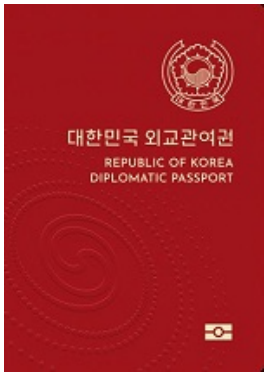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여권 및 여행증명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뉴스·공지-보도자료-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여권의 유효기간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구분		유효기간
▪ 18세 미만인 사람		5년
▪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1.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2.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3. 위 1.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5년) 규정 폐지

기존의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5년) 규정은 폐지되어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10년 복수여권이 발급됩니다. 다만, 병역미필자는 국외 출국 또는 체류 시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합니다(여권 유효기간과 무관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일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구분	유효기간
▪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단수여권의 발급

일반적으로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을 발급받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6조, 제12조의3 및 제11조제2항).

·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여권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여권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Q. 종전 여권에 비해 차세대 전자여권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A. 차세대 전자여권의 가장 큰 특징은 여권 표지면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화했다는 점과 여권의 보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보안성 부문에서는 각종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차세대 여권의 경우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소재 도입, 레이저 각인 등을 통해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는 여권 복제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요소들을 강화하였습니다.



<종전 일반여권>



<차세대 일반여권>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급된 여권 등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65호) 부칙 제3조 및 제4조 참조].

여권의 수록 정보

▪ 여권의 개인정보면에는 다음의 정보가 인쇄되고 전자적으로 수록됩니다(「여권법」 제7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긴급여권 발급
- 여행증명서 발급

2.2. 여권의 발급 및 사용 등

2.2.1. 여권 발급받기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여권의 발급

▪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이나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참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 ※ 여권사무 대행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신청·발급-접수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신청시 정보제공

▪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 본문).

-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여권법」 제8조제1항 단서).

발급신청인

▪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제3항 본문).

▪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제4항 본문).

▪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1.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3. 「민법」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9조제3항 단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신청인	대리인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및 그 배우자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친권자(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보호자(「여권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신청서류

▪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본인 신청 시 필요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대리인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함)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다만, 법정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3.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 다만, 보호자가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제4항, 「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항).

18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 시 필요서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 보호자 동의서 ▪ 보호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보호자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보호자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에 대한 신고접수증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법정대리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법」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의 심판서 또는 결정문 사본 등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위의 경우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류

※ 여권발급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신청·발급-최초 발급>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신청·발급-재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하기

▪ 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2조제1항).

▪ 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수수료 납부 면제대상

-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여권 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여권발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기본사항-수수료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 및 수령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받아야 하며,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권 부정발급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제1호).

2.2.2. 여권발급의 거부 · 제한 · 반납 등

여권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권 발급의 거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1항).

<table>
<tr><th colspan="2">여권발급(재발급) 거부 대상</th></tr>
<tr><td colspan="2">▪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td></tr>
<tr><td colspan="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td></tr>
<tr><td colspan="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td></tr>
<tr><td colspan="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 이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td></tr>
<tr><td colspan="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td></tr>
<tr><td rowspan="2">▪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td><td>1.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td></tr>
<tr><td>2.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td></tr>
</table>

여권 발급의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

<table>
<tr><th>제한사유</th><th colspan="2">제한기간</th></tr>
<tr><td>▪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사람</td><td colspan="2">2년</td></tr>
<tr><td>▪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td><td colspan="2">1년</td></tr>
<tr><td rowspan="3">▪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 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함)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 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은 그 통보된 사실이 있는 날부터 각각 다음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됨</td><td>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중한 경우</td><td>3년</td></tr>
<tr><td>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td><td>2년</td></tr>
<tr><td>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td><td>1년</td></tr>
</table>

▪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제3항).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여권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 여권 발급

▪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4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위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여권발급의 거부·제한 등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의 거부·제한 등이 해제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이나 여권의 반납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 본문).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착오나 과실 등으로 인해 여권이 발급되었다면,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반납 명령

▪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함)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

-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위의 여권 발급 등의 거부 사유 및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단,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해당 제한기간 동안 여권 등을 보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함)
-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위의 여권 발급 등의 거부 사유 및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함(해당 제한기간 동안 여권 등을 보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함)
- 착오나 과실로 인해 여권이 발급된 경우
-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8호).

위반 시 조치

▪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외교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및 제21조제3항).

2.2.3. 여권의 사용제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사용제한

▪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사용제한 등의 고시

▪ 외교부장관이 위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7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0조 전단).

▪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7조제3항).

▪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나 그 해제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인터넷 게재, 비상연락망, 대면 접촉,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0조 후단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16조).

여권의 사용이 제한된 곳이라도 예외적으로 여권사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허가사유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한 국가나 지역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위의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서류

▪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사용제한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table>
<tr><th colspan="3">신청서류</th></tr>
<tr><td colspan="3">1.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td></tr>
<tr><td colspan="3">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td></tr>
<tr><td rowspan="6">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td><td colspan="2">가.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td></tr>
<tr><td colspan="2">나.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td></tr>
<tr><td colspan="2">다.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td></tr>
<tr><td colspan="2">라.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td></tr>
<tr><td rowspan="3">마.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td><td>1) 재직증명서</td></tr>
<tr><td>2)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td></tr>
<tr><td>3)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이 때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이란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함)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위탁 등을 한 기관등의 장을,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의 장을 의미함(「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td></tr>
<tr><td colspan="3">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td></tr>
</table>

위반 시 제재

▪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제2호).

여권의 부정한 사용 및 양도 등은 금지됩니다.

부정사용의 금지

▪ 발급된 여권이 변조되거나,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여권법」 제1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5조, 제26조제1호 및 제2호).

금지행위	위반시 제재
▪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함)을 사용하는 행위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은 외교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및 제21조제3항).

2.2.4.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하기

여권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이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가능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5조, 제7조, 제7조의2제1항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참조).

-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 여권의 명의인 성명의 로마자표기

> -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신청·발급-접수기관 안내>에서 여권사무대행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구(舊)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2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말함)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수수료 납부하기

▪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려면 국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는 5,000원, 재외공관에서는 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 ※ 여권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기본사항-기재사항 변경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5. 여권 재발급받기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여권의 재발급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거나 1. 및 3.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9조제2항).

신청서류

▪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1조제3항,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 여권 재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 여권용 사진 1장
-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첨부하여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정부24, 영사민원24)에 여권의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여권 분실 신고서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6조의2).

※ 여권 재발급 신청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신청·발급-재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거주자들은 정부24(http://www.gov.kr)에서, 해외거주자들은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긴급여권 신청자 등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신청·발급-온라인 재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여권 분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여권명의인이 직접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분실이 신고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3호 참조).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에 접속하여 여권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대리로 분실신고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1) 의전상 필요한 경우(대통령 및 그 배우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구비)

3)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신청·발급-여권분실·습득>

수수료 납부하기

▪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2조제1항).

▪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수수료 납부 면제대상

-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여권발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기본사항-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의 재발급 및 수령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단서).

▪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여권이 재발급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4호).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권 부정재발급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제1호).

※ 여권 재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재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재발급의 거부·제한 등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여권-여권의 발급 및 사용 등-여권발급의 거부·제한·반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